

격리 동의서 (隔离同意书)

< 아래사항에 동의 거부 시 입국 불허나 강제퇴거조치 함.

如果不同意下列事项，将被拒绝入境或驱逐出境。 >

본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검역법 제16조 등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(자가 격리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시설에 격리)를 받음에 동의하며, 대한민국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시설에 격리의 경우 이로 인한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(1인당 210만원)을 입국 시 전액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입국심사에서 격리 면제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)

本人（上述人员）同意，按照《大韩民国关于传染病预防及管理的法律》第四十二条的规定以及《大韩民国检疫法》第十六条的规定，入境大韩民国后接受为期14天的集中隔离（居家隔离 或 在大韩民国政府定点设施内隔离），因在'在大韩民国政府定点设施内隔离'情况下发生的餐费、住宿费和交通费等所有费用（每人210万韩元）由本人入境时自行支付。（免于隔离人员与上述内容无关。）

☐ 동의함/同意 ☐ 동의하지 않음/不同意

日期 2021년 (年) 월(月) 일 (日)

(서명 또는 인) (签或章)